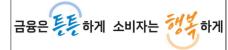


보도자료



보도	2024. 10. 8.(화) 석간	배포	2024. 10. 7.(월)
담당부서	기업공시국	책임자	팀 장 한성남 (02-3145-8479)
	지분공시2팀	담당자	조사역 전재영 (02-3145-8491)

상장사 임직원·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발생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

- ◈ 상장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의 관련 법규 미숙지 등에 기인하는 단기매매차익이 반복·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.
 - 이에 금융감독원은 미공개정보이용 방지 및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주요 단기매매차익 발생사례 등을 안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I.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개요

- *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§172 및 동법 시행령 §194~198 등
- □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를 통한 부당 차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,
 - 상장사의 **임직원** 또는 **주요주주**가 **특정증권** 등을 **6개월 이내** 매매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당해 법인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,
 -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불공정거래 방지가 목적이나 단기 매매차익은 미공개정보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.

Ⅱ. 주요 발생사례 및 유의사항

□ 금융감독원은 **단기매매차익**에 대한 지속 점검을 하고 있으며, **단차**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법인에 **단차** 발생사실을 **통보**하고 있습니다.

- 단기매매차익 점검 중 관련법규 이해 부족 등으로 단순·반복적 다차 발생사례가 지속 발생^{*}함에 따라.
 - * 최근 3년('21년~'23년)간 연평균 42.3건, 195.4억원(1건당 4.6억원) '21년(396.5억원, 58건) → '22년(119.6억원, 15건) → '23년(70.2억원, 54건)
- ⇒ **내부자거래 예방** 및 **투자자 주의 환기**를 위해 자주 발생하거나, 문의가 자주 들어오는 **주요사례** 및 **유의사항** 등을 **안내**하고자 합니다.

가 단기매매차익 주요사례 및 유의사항

- ? CB와 BW를 사고 보통주를 팔았는데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나요?
- □ 매수 및 매도 증권의 종류가 다른 이종증권*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며, 이 경우 수량 및 단가는 지분증권으로 환산하여 단기매매차익 발생 여부를 판단
 - * CB ↔ 보통주, BW ↔ 보통주, EB ↔ 보통주 등
 - 예) 상장사의 주요주주인 A사가 7월 1일 당해회사 **(B***를 950,000원에 **매수**하고, 기존에 보유중인 동사 **주식** 500주(@1,100원)를 9월 1일에 **매도**한 경우
 - * 액면가 1,000,000원, 행사가격 @1,000원, 매수일 현재 보통주 종가 @900원
 - → ① CB의 보통주 전환가능수량 = 1,000주(액면금액 1,000,000원 ÷ 행사가격 @1,000원)
 - ② CB 전환시 보통주의 규정상 취득단가 = @900원(CB 매수일 보통주 종가)
 - ③ (1,100원 900원) x 500주 = 100,000원의 단기매매차익 발생
- ?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나요?
- □ 단기매매차익의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여부를 불문하고,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임
 - 예) 상장사 임원인 B가 4월 1일에 당해회사 **주식** 100주(@10,000원)를 **매수**하고, 동사 **주식** 100주(@12,000원)를 5월 15일에 **매도**한 경우 (임원 B는 당해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함)
 - → (12,000원 10,000원) x 100주 = 200,000원의 단기매매차익 발생 (미공개정보 이용여부와 무관)

- ? 임원이 재직 중 주식을 매수하고, 퇴임한 후 해당 주식을 매도하였는데도 반환의무가 발생하나요?
- □ 임직원의 경우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인 경우 차익 반화대상이므로 퇴사 후에도 차익 반화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
- 예) 상장사 임원인 C가 재직 당시 당해회사 **주식** 200주(@5,000원)를 **매수** (8월 1일)하고, 퇴직(9월 1일)한 후 동사 **주식** 100주(@8,000원)를 10월 1일에 **매도**한 경우
- → (8,000원 5,000원) x 100주 = 300,000원의 단기매매차익 발생
- ※ 다만, **주요주주**의 경우 매수 및 매도 **모든 시점에 주요주주**의 **지위에 있어야만** 반환대상이 됨
- ? 매수한 다음 매도한 경우에만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나요?
- □ 특정증권 등 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뿐만 아니라 매도 후 6개월 이내 매수하여 얻은 단기매매차익도 반환대상에 해당
- 예) 상장사 임원인 D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당해회사 **주식** 1,000주 (@10,000원)를 9월 1일 **매도**한 이후, 10월 1일에 동사 **주식** 500주 (@9,000원)를 **매수**한 경우
 - → (10,000원 9,000원) x 500주 = 500,000원의 단기매매차익 발생
- ? 거래기간 중에 손실이 더 크게 나서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봤는데, 왜 단기 매매차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나요?
- □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다수의 매매거래 중 **손실이 발생한 거래**는 **제외**하고 **이익이 발생한 거래**만을 대상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
 - 예) 상장사 임원인 E가 당해회사 **주식** 200주(@10,000원)를 **매수**(5월 1일)하고, 동사 **주식** 50주(@9,000원)를 **매도**(6월 1일)한 뒤, 동사 **주식** 100주 (@10,300원)를 **매도**(7월 1일)한 경우
 - → ① (9,000원 10,000원) x ^(메메일치수량) = <u>△50,000원</u>(해당 거래의 손실은 미반영) ② (10,300원 - 10,000원) x 100주 = 30,000원의 단기매매차익 발생

- ? 스톡옵션(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사유)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반환 대상이 아닌 게 맞나요?
- □ 스톡옵션 등 **단차반환 예외 사유**에 해당되는 경우^{*} 해당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단기매매차익은 미발생(단, 그 이외에 6개월 내다른 매수와 매도 거래가 있다면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할 수 있음)
 - *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취득, 공개매수 응모에 따른 주식등 처분, 공로금·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주식의 취득 등(자본시장법 시행령 §198 및 단차반환규정 §8)

예1)	일자	증권 수량 및 단가	거래종류
	(7.1.)	주식 100주(@110원) 취득(+)	스톡옵션 행사(단차 예외)
	(8.1.)	주식 100주(@200원) 처분(-)	장내매도

→ 8.1. 매도에 대응되는 매수거래가 없으므로 단기매매차익 미발생

예2)	일자	증권 수량 및 단가	거래종류
	(6.1.)	주식 100주(@100원) 취득(+)	장내매수
	(7.1.)	주식 150주(@110원) 취득(+)	스톡옵션 행사(단차 예외)
	(8.1.)	주식 50주(@200원) 처분(-)	장내매도

→ ① 6.1. 매수와 8.1. 매도가 대응되어 단기매매차익 발생 ② (200원-100원) x 50주 = 5,000원의 단기매매차익 발생

<mark>나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한 상</mark>장사의 책임

- □ 금융감독원으로부터 **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**받은 **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** 및 **정기보고서**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**공시**하여야 함
 - o 한편, **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책임**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게 있음*
 - * 다만, 해당 법인이 적절한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는 해당 법인을 대위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
- ※ 금번 내용은 최근 적발된 주요 사례 및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한 자료로 모든 사례를 담고 있지 않으며, 법규 개정 등에 따라 해당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무 수행시에는 현행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◇ 금융감독원은 지분공시 제도 및 주요 Q&A를 알기 쉽게 정리한 「기업공시 실무안내」책자 및 PDF 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,
 - 동 자료는 **DART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**(dart.fss.or.kr) 내 '공시 업무·제도-기업공시제도일반' 메뉴에서 확인 가능
- 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